-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656호

2021. 10. 14.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1. 09. 27. 양천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21. 09. 28. 행정재경위원회
다. 상정일자 : 제2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
2021. 10. 14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기획재정국장)

가. 제안이유
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술용역 추진 시 연구과제 중복 선정 금지, 심의기능의 공정성 제고,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대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술용역 추진에 있어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○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함. (안 제5조제1항)
○ 심의위원의 제척·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사항을 규정함.(안 제6조의2)
○ 유사 과제를 반복하여 수행하지 않도록 과제 심의 전 검증을 거치도록 규정함.(안 제9조제3항)
○ 학술용역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를 강화함.(안 제12조)
○ 학술용역 결과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토록 함. (안 제14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한동석)

가. 개정 취지
○ 본 조례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촉위원의 수가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하며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사항을 규정하였음. 또한 학술용역 추진 시 연구과제 중복 선정 금지,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대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술용역 추진에 있어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.

나. 검토 내용
○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
- 제5조제1항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음.
- 제6조의2에서는 심의위원의 제척과 기피를 규정하고 있음.
- 제9조제3항은 주관부서 장의 유사과제 반복 수행을 방지하고 있음.
- 제12조에는 공무원의 책임 관리 강화를 위해 학술용역실명제를 신설하였음.
- 제14조제2항을 신설하여 학술용역의 공개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음.

다. 종합의견
○ 본 조례안은 외부연구용역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추진의 투명성과

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음.

○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촉위원을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하고,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심의위원회 자체의 공정성을 담보하였음.

○ 유사과제 반복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을 거치도록 한 것, 학술용역 실명제를 통해 담당자의 책임 관리를 강화한 것은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조치라고 판단됨.

○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 수행의 질을 높이는 개정안이므로 타당하다고 보고드림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9명, 출석의원 7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